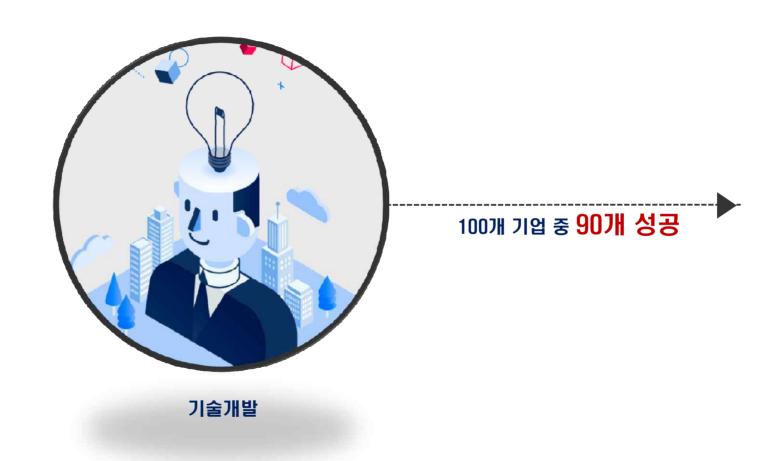
NEP 인증제품 공공구매제도 확대 필요성



- 1 (제도 도입 배경
- 2 신제품[NEP] 인증제도
- 3 신제품(NEP) 공공구매 필요성

1 (제도 도입 배경







중소기업 개발제품의 사업화 지원을 위하여 NEP제도 탄생

"죽음의 계곡(Valley of Death)을 넘어라"

-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을 사업화하는 과정 :Death Valley라 부를 정도로 극복하기 어려운 난관
- ●신제품의 시장진출과 안정적인 판로확보 :중소기업이 성장을 위해 넘어야 할 가장 힘든 관문



인증제품의 초기판로 지원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성장 및 국가 경쟁력 강화

신제품(NEP)인증



- -신기술을 적용하여 개발된 제품
- -성능, 품질, 경제성 평가
- -우수한 제품 NEP마크 부여

공공구매 촉진



- -인증신제품에 대한 판로지원(의무구매 등)
- -신기술 제품 사업화 촉진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성장기반 구축

기술개발 善순환



신기술제품 개발

신제품(NEP)인증

판로지원

매출증가

"중소기업에서 부처별 복수 인증 문제와 인증취득 후 판로확보 등 애로사항 호소"



지치

인증제도, '다다익선'인가

소비자에게는 혼란을 초래하고, 제품별로 여러 개의 인증을 취득하여야 하는 기업에게는 부담이 되는 제도로 변질되고 있는 것이다. **Well-being**

각종 인증제도의 허실-'불편한 인증제도' 개선-통합 등 필요



정부, '인증제도 중복 해소'추진…그 방향과 방법은?



과도한 기업 인증제도 대폭 완화

'국가인증제도 포럼'에서 인증제도간 부처 간 협업 추진



기업 연구.개발투자 부진-新기술제품 판로 미비탓 중앙일보

정부, '인증제도' 크게 손질한다

정부가 기업에 부담을 야기하고 소비자에 혼란을 초래하는 것으로 지적돼 온 '중복 인 증'을 없애기 위해 발벗고 나선다.



정부 인증제도 통폐합 및 의무구매 제도 도입

~'90.1월

신기술 개발에 대한 인증제도 운영 ~'03. 12월

인증제도 통폐합 방안 마련 ~'06. 1월

인증통폐합 및 의무구매 도입

공공구매 및 인증통폐합 방안

국산 신기술 제품의 공공구매 방안 모색 신기술 관련 인증 통합 방안 마련

인증제도 통폐합

정부 인증제도 통폐합(NEP, NET)

의무구매제도 도입

NEP인증제품 의무구매(20% 이상)제도 도입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근거 마련

'93. 5. 개발기술 실용화촉진요령에 의거 신기술(NT)인증제도 도입 → 기계류·부품·소재의 국내 원천 기술개발 촉진 도입기 1993~1995 '95.5. 자본재 품질인증제도(EM) 도입 '03.12. VIP 국산신기술제품 공공구매 방안 지시 성장기 2003~2004 '04. 1. 공공기관의 신기술제품 구매촉진방안 보고(산자부) '04. 6. 공공기관 20 % 의무구매 시범실시(산자부 산하 33개 기관) '05. 1. 구매기관 확대('06년 280기관 ⇒ 472기관) '06. 1. 정부인증제도 통폐합(신기술.신제품인증(5부 7개 인증)) 2005~2008 발전기 * 기술인증 NET(과기부, 건교부, 환경부), 제품인증 NEP(산자부, 정통부) '06. 10. NEP제품 구매의무화 법적근거 마련 '08. 2. 부처 통폐합 따른 업무소관 재조정(기술인증 NET, 제품인증 NEP) '11. 11. 인증유효기간 추가연장 법적근거 마련(최대 3회, 9년) '12. 1. 공공구매 책임자제도 도입 '13.3. 공공구매 미이행기관 개선권고제 신설 안정기 2009~2018 '14.5. 개선권고 미이행기관 공고제도 신설 '16. 1. 의무구매 대상 공공기관 확대(214개 → 450개) '17. 12. 의무구매 범위 구분 및 지정 확대 방안 마련

2

신제품(NEP) 인증제도

2 신제품(NEP) 인증제도 _신제품(NEP) 인증기업 지원제도

공공의무구매 20% 이상 의무구매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우선구매지원 수의계약 구매 [국가계약법] R&D 지원 기술개발사업 선정 우대 [가점 2점, 세계일류연계 시 최대 5점] 수출지원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및 중소기업수출지원 사업 선정우대

2 신제품(NEP) 인증제도 _신제품(NEP) 의무구매제도

의무구매

중소기업 NEP인증제품의 판로지원 위해 '06년부터 시행

- -해당 품목(물품분류번호) 구매액의 20% 이상 NEP인증 제품으로 구매
- -품목별 구매액은 20% 미달되어도 해당품목 합계액의 20% 이상이면 구매목표 달성

의무구매 대상기관('19년) 455개 기관

중앙행정기관 44 지방자치단체

교육자치단체

정부산하단체

구매면제

구매가 불가능하거나 부당하여 산업부장관이 인정할 경우 제외

* 가격 고가, 규격 상이, 안전저해, 양산 불능, 기타 구매 불가능 등

구매면책

고의, 중대과실이 아닌 경우 NEP제품 구매로 인한 손실책임 면제

실적관리

매년 3월 구매계획 및 실적 제출, 실적 미달시 개선권고 등 사후관리

의무구매

[산업기술혁신촉진법] 20% 이상 의무구매

- -중소기업 NEP인증제품의 판로지원 위해 '06년부터 시행
- -해당 품목(물품분류번호) 구매액의 20% 이상 NEP인증 제품으로 구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약칭: 산업기술혁신법)

[시행 2018.4.17.] [법률 제15344호, 2018.1.16, 타법개정] 최종공포내용

- 图 □ 제17조(인증신기술 및 인증신제품에 대한 지원) ① 정부는 제15조의2세1할에 따른 신기술 인증 또는 제16조제1할에 따른 신제품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새로운 수요를 만들어 내기 위한 자금 지원과 인증신제품 및 신기술적용제품의 우선구매 등의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11.5.24.〉
 - ② <u>대통령령</u>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은 <mark>구매하려는 품목에 인증신제품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품목의 구매액 중 <u>대통령령</u>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을 <u>대통령령</u>으로 정</mark>
 - 하는 인증신제품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다만, 인증신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경무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경무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5,24., 2012,1,26., 2013,3,2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시행 2018.1.1.] [대통령령 제28471호, 2017.12.12, 타법개정] 최종공포내용

- □ 제23조(인증신제품 의무구매의 비율 등) ① 법 제17조제2항 본문에서 "해당 품목의 구매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이란 해당 품목(「물 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인증신제품에 부여된 물품분류번호 및 제품규격이 같은 품목을 말한다)의 구매액의 100분의 20월 말한다.
 - "구매하려는 품목에 인증신제품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품목의 구매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증신제품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국가계약법 시행령)

[시행 2018.6.7.] [대통령령 제28690호, 2018.3.6., 일부개정] 최종공포내용

- <u>₹ 전 │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무)</u> ① <u>법 제7조제1항</u>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생절 2010,7,21,, 2011,10,28,, 2011,11,23,, 2012,5,14,, 2013,12,30., 2014,5,22,, 2015,12,31,>
 - 3. <u>「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u> <u>제2조제1호</u>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한 다음 각 목의 제품을 해당 중소기업자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
 - 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 나.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13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
 - 다. <u>「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u>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원을 받아 개발이 완료된 제품으로서 당초의 수요와 연계된 자가 구매를 협약한 제품
 - 라. <u>「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u>에 따라 신제품으로 인증받은 제품
 - 마. <u>「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u> 또는 <u>「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u>에 따라 인증 또는 지정 ·고시된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으로서 주무부장관이 상용화 단계에서 성능을 확인한 제품
 - 바. <u>「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u>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 고시된 제품
 - 사. <u>「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8조의 2</u>에 따라 지정 고시된 유수조달 공동상표의 물품(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26조 제1항 3호 라목]

제26조 제1항 _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호 라목 _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 제16조에 따라 신제품으로 인증받은 제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취: 지방계약법 시행경)

[시행 2018. 1. 18.] [대통령령 제 28586호, 2018. 1. 16., 타법개정] 최종공포내용

- 图 □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u>법 제9조제1항</u> 단서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개정 2011, 9, 15,, 2011, 10, 28,, 2011, 11, 23,, 2012, 5, 23,, 2012, 10, 8,, 2013, 3, 23,, 2013, 11,
 - 20,, 2014, 5, 22,, 2014, 11, 19,, 2015, 8, 19,, 2016, 1, 15,, 2016, 9, 13,, 2016, 9, 29,, 2017, 7, 26, >
 - 6,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사업자로 하여금 특수한 물품·재산 등을 매입하거나 제조하도록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 라. <u>「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u>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그 생산자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로서 주무부장관으로부터 인증 또는 지정된 유효기간[해당 물품에 대한 인증 또는 지정 유효기간이 3년을 넘는 경우에는 3년을 말하며, 주무부장관이 인증 또는 지정 유효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된 기간(3년을 넘는 경우에는 3년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
 -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 2)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13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받은 제품
 - 3) <u>「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u>에 따라 신제품으로 인증된 제품
 - 4) <u>「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u>, <u>「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u> 또는 <u>「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u>에 따라 인증 또는 지정 고시된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으로서 주무부장관이 상용화 단계에서 성능을 확인한 제품
 - 5) <u>「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u> <u>제18조</u>에 따라 무수조달물품으로 지정 고시된 제품

[제25조 제1항 6호 라목 3]

제25조 제1항 _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mark>수의계약</mark>에 의할 수 있다. 6호 라목 3 <mark>산업기술혁신 촉진법</mark> 제16조에 따라 신제품으로 인증된 제품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공기업 ·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시행 2018. 7. 5.] [기획재정부령 제683호, 2018. 7. 5., 일부개정] 최종공포내용

7. <u>「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 제2항</u>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같은 조 제1항제3호 사목에 따라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같은 목의 고시 금액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라 <u>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u> 금 액 미만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8조 제1항 7호]

제8조 제1항 _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7호 _ <mark>국기를당시저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사행령</mark> 제26조제1항·제2항에 따라 <mark>수의계약</mark>으로 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

2 신제품(NEP) 인증제도 _NEP정보관리시스템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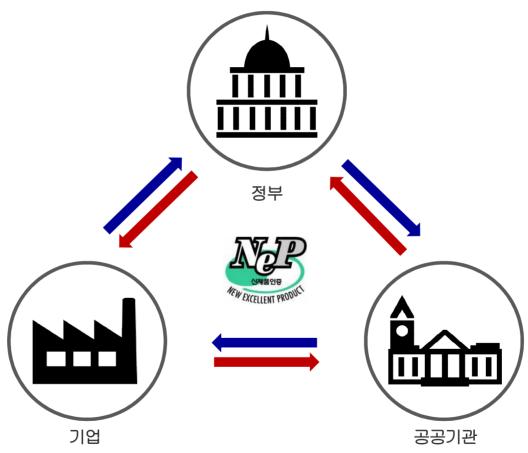
2 신제품(NEP) 인증제도 _NEP정보관리시스템 운영



3

신제품(NEP) 공공구매 필요성

▮사회적가치



▮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







































| 리쇼어링



▮일자리 창출





감사합니다

Thank you